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NEWS LETTER OF MAY 2009

베트남 투자/세무/회계 주요질문 및 답변요약사례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1. 설비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면세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고, 면세처리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투자기업이 설비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설비가 허가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유형자산을 구성할 경우에는 동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투자허가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동 투자가 베트남정부에서 규정한 투자장려분야에 속하거나, 동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 Decree No 149/2005/ND-CP의 Appendix III 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외국투자기업은 사전에 MOT(Minist of Trade)로부터 수입계획 및 동 수입품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ENDIX I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LISTS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PARTICULARLY ENCOURAGED AND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ENCOURAGED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 8, 2005)

I. List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particularly encouraged:

1. Production or processing with 80% or more of the products for export;
2.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forest products (excluding timber) or aquatic products from domestic raw materials, with 50% of products for export;
3. Producing new varieties or breeds with high quality and economic benefits;
4. Agricultural farming, forestation, aquaculture;
5. Producing high-quality steel, alloy, nonferrous metals, special metals, steel cast, porous iron; cast iron metallurgy;
6. Manufacturing machines, equipment and detail assemblies for use in the domains of oil and gas exploitation, mining and energy; manufacturing big-sized elev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metal-working machines and metallurgical equipment;
7. Manufacturing med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analytical technologies and extracting technologies;
8. Manufacturing equipment for testing food toxins;
9. Producing new materials, rare and precious materials; applying new biotechnologies, and applying new technologies in the manufactur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0. Producing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11. Hi-tech industries;
12. Making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counting for 25% of turnover;
13. Investing in and manufacturing waste-treating equipment;
14. Treating polluti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treating waste;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15. Producing antibiotic materials;

16. Making investment in which BOT, BTO or BT contracts.

II. List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encouraged

1. Exploring, exploiting and intensively processing minerals;

2. Producing or processing products 50% or more of which are for export;

3. Producing, processing and trading in exports with a value exceeding 30% of the total value of goods produced and/or traded in by the projects in a fiscal year;

4. Regularly employing 500 laborers or more;

5. Planting industrial perennial trees or fruit trees on newly reclaimed or reused land and bare hills (except agricultural farming, afforestation and aquaculture); reclaiming land in service of agricultural, forestry or fishery production;

Processing farm produce from domestic raw materials

Processing and preserving aquatic products from domestic raw materials. Off-shore fishing.

Processing forest products (except domestic natural forest timber);

6. Preserving food; post-harvest preservation of farm produce;

7. Developing the petro-chemical industry; building and operating oil and gas pipelines, depots, and ports;

8. Investing in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precision tools, industrial production safety inspection and control equipment; producing molds for metal and non-metal products;

9. Investing in the manufacture of medium- and high-voltage electric equipment;

10. Investing in the manufacture of diesel engines; equipment and spare parts for freighters and fishing ships; dynamic and hydraulic machines and spare parts, compressors;

11. Manufacturing automobile and motorbike spare parts; assorted automobiles; manufacturing and assembling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s and vehicles; manufacturing technical equipment for the transport service; investing in the manufacture of construction machines,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locomotives and carriages;

12. Shipbuilding and repair; manufacturing dynamic machines, equipment and spare parts for freighters and fishing ships;

13. Manufacturing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equipment, investing in the production of computers and software products (except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Investing in and providing Internet connection services, Internet access services, and Internet application services in geographical areas defined in Appendix II to this Decree; providing postal item and parcel delivery services;

Providing services of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trai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human resources;

14. Investing in producing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 components and equipment;

15. Investing in manufacturing tool machines, machinery, equipment, spare parts and machines in service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ion, food-processing machines, and 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16. Investing in manufacturing equipment and machines for th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17. Producing insecticide materials;

18. Investing in producing plant protection drugs, insecticides, preventive and curative medicines for animals and aquatic animals, and veterinary drugs with the domestic added value of 40% or more;

19. Producing base chemicals, pure chemicals, special-use chemicals and dyes;

20. Producing cleansing materials and chemical additives;

21. Producing special-type cement, composite materials, sound-proof, electric-insulated and heat-resistant materials, wood substitute composite materials, refractory materials, except new materials, rare and precious materials; construction plastic, glass fibers;

22. Producing light construction materials, except new materials and rare and precious materials;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23. Producing paper, board and artificial fiberboard from domestic agricultural and forest materials; producing paper pulp;

24. Weaving, finishing textile products; producing silk and assorted yarns; tanning and preliminarily processing leather;

25. Producing high-class materials and auxiliary for production of footwear and garments for export;

26. Producing high-quality packings for exported goods;

27. Producing drug materials, except for antibiotic materials, and curative medicines for human use; building pharmaceuticals-preserving stores; stores of reserve medicines for human use in preparation for floods, storms, natural disasters and dangerous epidemics;

28. Improving and developing energy sources;

Investing in building power plants, power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networks, building establishments operated by solar energy, wind power or bio-gas; applying consuming technologies;

29. Developing mass transit: investing in railway vehicles, passenger transport by cars of 17 seats or more or by waterway motor vehicles;

30. Building and renovating bridges, roads, airports, harbors, railway stations, car terminals, car-parks; opening new railway routes;

31. Investing in building water plants,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32. Investing in the construction and commercial operation of infrastructures of industrial parks, export processing zones or hi-tech parks. Investing in production or processing activities in industrial parks, export-processing zones, hi-tech parks, small- and medium-sized industrial parks, and industrial clusters;

33. Technical services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rvices in support of agricultural, industrial or forestry tree planting; service in support of husbandry; services in support of forestry; aquacultural services; services on animal protection; hybridizing and cross-breeding to create new varieties and breeds, except new varieties and breeds of high quality and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economic benefits; services of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aquatic products;
building store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aquatic products;

34. Making, exploiting and processing salt;

35. Opening semi-public, people-founded or private schools at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pre-schoo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intermediate vocational education, and collegial and tertiary education;

Setting up job-training establishments for raising workers' skills;

36. Setting up houses of folk culture and folk art troupes; producing, manufacturing and repairing folk musical instruments; maintaining and conserving museums and houses of folk culture;

37. Setting up people-founded or private hospital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tting up preventive medicine and hygiene establishments; setting up centers providing health care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rphans, geriatric centers;

Investing in producing medical equipment, except medical equipment used in analytical technologies or extracting technologies, orthopedic instruments, wheelchairs and special-use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8. Providing legal consultancy, investment or business administration consultanc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nsultan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transfer consultancy.

39. Investing in new production lines, expanding scales and renewing technologies in the domains defined in this Appendix I.

40. Investing in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establishment from inner cities to industrial parks, export-processing zones, hi-tech parks or industrial clusters.

41. Producing children toys.

42. Planting rice, cotton or tea for processing industries, planting medicinal trees (except agricultural farming, forestry and fisheries); producing plant varieties and animal breeds, except for those of high quality and economic benefits.

43. Livestock and poultry rearing under agricultural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after farm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model or on a larger scale.

44. Investing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s for the leather industry, mining machines, industrial robots, and power generators.

45. Producing coke, activated charcoal; producing fertilizers.

46. Traditional crafts: carving, mother-of-pearl inlaying, lacquerware, intaglio, making of bamboo articles, carpet making, silk weaving, brocade weaving, embroidery, pottery, ceramics, making of fine art bronze articles, and “do” (rhamnoneuron) paper.

47. Investing in and building grade-1 marketplaces, exhibition centers; trade promotion, activities of mobilizing and lending capital by people’s credit funds.

48. Providing pilotage and rescue service on sea.

49. Investing in building national tourist resorts, bio-tourist resorts; national parks, investing in building cultural parks with spo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al activities.

50. Re-cycling discarded materials and wastes, gathering garbage.

51. Investing in building technical establishments and works, laboratories, laboratory stations in order to apply new technologies to production.

APPENDIX II

LIST OF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SOCIO-ECONOMIC DIFFICULTIES OR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 8, 2005)

Ordinal number	Provinces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socio-economic difficulties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1	Bac Kan		All districts and towns
2	Cao Bang		All districts and towns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3	Ha Giang		All districts and towns
4	Lai Chau		All districts and towns
5	Lao Cai	Lao Cai city	All districts
6	Son La		All districts and towns
7	Bac Giang	Bac Giang city	All districts
8	Hoa Binh		All districts and towns
9	Lang Son	Lang Son city	All districts
10	Phu Tho	Viet Tri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11	Quang Ninh	Hai Ninh district Van Don district Yen Hung district Cam Pha town Uong Bi town Mong Cai town	Ba Che district Binh Lieu district Dam Ha district Hai Ha district Hoanh Bo district Tien Yen district Dong Trieu district Co To district
12	Tuyen Quang		All districts and towns
13	Thai Nguyen	Thai Nguyen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14	Yen Bai		All districts and towns
15	Binh Phuoc		All districts and towns
16	Dak Lak	Buon Ma Thuot city	All districts
17	Gia Lai	Pleiku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18	Kon Tum		All districts and towns
19	Lam Dong	Da Lat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20	Binh Thuan	Phan Thiet city	All districts
21	Binh Dinh	Quy Nhon city	All districts
22	Hai Duong	All districts except Chi Linh district	Chi Linh district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23	Ha Tinh	Ha Tinh town	All districts
24	Ninh Binh	Tam Diep town and remaining districts, except Nho Quan, Yen Mo and Gia Vien districts	Nho Quan district Yen Mo district Gia Vien district
25	Nghe An	Cua Lo town and district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is Appendix)	Ky Son district Tuong Duong district Con Cuong district Que Phong district Quy Hop district Quy Chau district Nghia Dan district Anh Son district Tan Ky district Thanh Chuong district Do Luong district
26	Ninh Thuan	Phan Rang town	All districts
27	Phu Yen	Tuy Hoa city	All districts
28	Quang Tri	Dong Ha town	All districts, except Dong Ha town
29	Quang Nam	Tam Ky town	All districts, except Tam Ky town
30	Quang Ngai	Quang Ngai city	All districts
31	Thanh Hoa	All districts except those included in the list of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is Appendix)	Quan Hoa district Ba Thuoc district Lang Chanh district Thuong Xuan district Quan Son district Muong Lat district Nhu Xuan district Ngoc Lac district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Cam Thuy district Thach Thanh district Nhu Thanh district
32	Thua Thien Hue	Hue city	All districts
33	An Giang	Long Xuyen city	All districts
34	Bac Lieu		All districts and towns
35	Ca Mau	Ca Mau city	All districts
36	Dong Nai	Long Khanh district Cam My district	Dinh Quan district Tan Phu district Xuan Loc district
37	Kien Giang	Rach Gia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38	Khanh Hoa	All districts except those included in the list of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is Appendix)	Khanh Vinh district Khanh Son district Truong Sa district
39	Soc Trang		All districts and towns
40	Tra Vinh		All districts and towns
41	Vinh Phuc	All districts and towns, except Lap Thanh, Tam Duong and Binh Xuyen districts	Lap Thach district Tam Duong district Binh Xuyen district
42	Can Tho	Can Tho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43	Tay Ninh	Tay Ninh town	All districts
44	Thai Binh	All districts and Thai Binh city	
45	Long An	Tan An town	All districts
46	Dong Thap		All districts and towns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47	Tien Giang	My Tho city	All districts and towns
48	Quang Binh	Dong Hoi city	All districts
49	Ba Ria-Vung Tau	Chau Duc district Xuyen Moc district Long Dat district	Tan Thanh district Con Dao district
50	Vinh Long		All districts and towns
51	Hanoi city	Soc Son district	
52	Ho Chi Minh city	Can Gio district Nha Be district Cu Chi district	
53	Ben Tre		All districts and towns
54	Bac Ninh	Gia Binh district Que Vo district Yen Phong district Luong Tai district Thuan Thanh district	
55	Ha Tay	Ba Vi district My Duc district Phuc Tho district Quoc Oai district Thach That district Ung Hoa district	
56	Da Nang city	Hoa Vang district and Thanh Khe, Ngu Hanh Son and Lien Chieu urban districts	Hoang Sa island district
57	Ha Nam	All districts and towns	
58	Hung Yen	All districts and towns	
59	Binh Duong	Ben Cat district Phu Giao district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Tan Uyen district Dau Tieng district	
60	Hai Phong	Vinh Bao district Tien Lang district	Bach Long Vi district Cat Hai district
61	Dien Bien	Dien Bien Phu city Muong Lay district Dien Bien district	Muong Cha district Tua Chua district Tuan Giao district Dien Bien Dong district Muong Nhe district
62	Dak Nong	Dak Mil district Cu Jut district Dak Rlap district	Gia Nghia town Dak Song district Krong No district Dak Glong district
63	Nam Dinh	All districts and Nam Dinh city	
64	Hau Giang	Long My district Vi Thuy district	

APPENDIX III

LIST OF GROUPS OF EQUIPMENT AND FACILITIES EXEMPT FROM TAX ON FIRST-TIME IMPORT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 8, 2005)

1	Hotel room furniture and interior decoration (beds, cupboards, tables, chairs, telephones).
2	Sanitary ware (bathtubs, lavatory pans, lavabos, supplies for installing sanitary ware, mirrors).
3	Living-room sets (tables, chairs)
4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kitchens, dining-rooms, restaurants and bars (assorted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cookers and cooking devices).
5	Paintings, statues, carpets and other decorative articles.
6	Refrigerators, television, microwave ovens, smoke consumers, vacuum cleaners and machines for deodorizing cups, plates and bowls
7	Audio and video equipment
8	Golfing gears

2.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 차량이 수입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1번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수입관세의 면세조건이 있는바, 동 차량이 종업원의 출퇴근에 이용되고 좌석이 24석 이상인 경우에만 수입관세가 면제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 승용차는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3. 베트남에서는 기업에 경리장(Chief Accountant)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격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도 경리장을 할 수 있나요?

베트남의 경우 경리장은 법적으로 등록된 『경리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리장의 직위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해당되므로, 자격소지자가 수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인의 경우 경리장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종사 및 교육기관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회계관련 자격증 또는 경험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최소한 1년이상 수행해야 하는등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경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4. 베트남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부인되는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베트남에서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형식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두번째는 실질요건으로서 회사의 business와 관련되어 revenue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상 항목 별 세부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비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가상각한도초과액, 범위초과 광고비&판촉비, 특수한 경우의 지급이자(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미 출자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해당됨)등이 있습니다.

5.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3개월 이상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를 위하여 회사는 일정율의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및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부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료	합계
회사	15%	2%	17%
근로자	5%	1%	6%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을 Net base로 하는 경우 소득세 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에 대한 납부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베트남어로 번역이 필요하여 전문 번역인력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이를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매건 50만동 이상의 번역료 지급시 회사는 10%를 원천징수하여 매월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voucher)를 함께 주면 돈 받은 사람은 연말에 연간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양자간 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의 절차를 구비하면 동 지급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비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의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와 같이 베트남에 기업실체가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또한 계약서 상 베트남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부담자가 불분명한데, 계약당사자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베트남에 기업실체가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서(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와 법인세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용역의 종류	부가세	법인세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Đ	Đ
1	Trading: distribution and supply of goods, raw materials, supplies, machinery and equipment in Vietnam	1 %	1%
2	Services	5%	5%
3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out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attached to construction works	5%	2%
4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with supply of materials or machinery and equipment attached to construction works	3%	2%
5	Transportation	1.25%	2%
6	Other production or business activities	2.5% or 1.25%	2%
7	Interest	Exempt	10%
8	Income from royalties	Exempt	10%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말씀하신 컨설팅 용역이라면 위 용역의 종류 중 services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율과 법인세율은 각각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순서는 부가세가 먼저 적용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Case 1) 총 용역대금 USD100,000, 한국의 컨설팅회사와 베트남에서의 세

액을 공제하고 송금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인세= $(100,000 \times 5\% = 5,000$, 법인세
 $= (100,000 - 5,000) \times 5\% = 4,750$, 합 = 9,750

Case 2) 순 용역대금 USD100,000, 한국의 컨설팅회사에 베트남에서의 세액

과 무관하게 동금액을 모두 송금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
 $= (100,000 / 0.95) \times 5\% = 5,263$ (Gross up 을 해야하므로 case1 과는 반대로 법
인세부터 계산함), 부가세= $(105,263 / 0.95) \times 5\% = 5,540$, 합 = 10,803

8.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 비용중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절세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등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거비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회사와 임대인이고 임차료가 회사에서 임대인에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액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세대상 소득금액(Gross 금액)의 15%중 작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종업원에게 동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전체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될 것 입니다. 요즘 호치민, 하노이 등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APT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고,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크지않다면 이를 급여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금전이 아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동 기숙사의 인당 감가상각비와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5% 중 작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기타 회사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교육비 보조금, 학교에 직접 지급된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외국인자녀의 학자금보조금 및 회사가 직접 구매한 외국인 종업원의 고국 방문 비행기 운임(종업원 가족의 비행기 운임은 과세대상 임) 등은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오니, 이러한 부분은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9. 한국에서는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회계감사 수수료도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자산규모 기준 등은 없습니다.

회계감사수수료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시간(man hour)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규모,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이 영향을 미칩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Quality Control 을 받는 Global Big4 회계법인(Deloitte, PWC, E&Y 및 KPMG)인지, 아니면 베트남 내의 Local 회계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당연히 Global Big4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수수료 Local 회계법인에 비하여 비싸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background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략적으로 감사수수료를 언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회계감사서비스 또한 회사가 회사의 설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본 회사는 금년 11월에 설립하여 첫 사업연도가 채 2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003년에 발표된 Accounting Law에 따르면 첫 사업연도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하여 회계감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산일은 Investment License 의 일자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동 기간을 더한 기간을 1 회계기간으로 간주하여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이던지 첫 회계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을것입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11.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얼마나 내야하는지, 또한 기타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일반세율은 28%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종이 베트남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인 경우 20%(10년간), 15%(12년간), 10%(15년간)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 및 50%의 세금감면이 적용됩니

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그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투자기간 동안에는 일반세율 28%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외국인 적용 소득세율은 베트남에서 1년중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 급여)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베트남인		외국인	
VND	Rate (%)	VND	Rate (%)
0 – 5000.000	0 %	0- 8.000.000	0 %
5.000.001 – 15.000.000	10%	8.000.000 – 20.000.000	10%
15.000.001 – 25.000.000	20 %	20.000.000– 50.000.000	20 %
25.000.001 – 40.000.000	30%	50.000.000-80.000.000	30%
40.000.001 이상	40%	80.000.000 이상	40%

부가세의 경우 일반세율은 10%이며, 수출품인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생수나 비료 생산 등 생필품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해야할 세금으로는 관세, 토지사용관련 세금, 토지
사용권 및 건물취득관련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12.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
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기존에는 이윤송금세(세율 3%, 5%, 7%)가 있어서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한 기업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였으나 이는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동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요구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3.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마케팅 활동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등의 계산시 어떠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 판촉비, 에이전트 수수료, 브로커 커미션,회의비 및 접대비 등은 이를 제외한 정상비용(원부재료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10%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판촉이나 광고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용목적은 기재해야 하며 동 제품의 원가는 제조원가로 처리될 수 있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습니다. 또한 시장조사 및 전시회관련 비용이나 조기대금지불 거래처, 높은 성과를 낸 대리점, 대량구매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위에서 말한 10%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1)한 분기에 있어서 월별 누적매입부가세액이 누적매출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되는 재화와 관련된 초과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로 환급이 고려됨

3)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구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a. 신규투자업체가 부가가치세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매출부가세를 산출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환급세액이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억동을 초과할 경우 각 분기별로 환급이 고려됨

- b.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전문화를 위해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간 매입부가세 공제를 한 후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있는 매입부가세 잔액은 환급됨.

4)합병,해산,청산,파산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5)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있거나 환급에 관한 재무부의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매출채권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동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일반적으로 부가세 호나급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환급신청서:신청지역,환급액 및 환급대상 기간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Form 10-GTGT)

2)다음 사항에 대한 합계 LIST: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기납부부가세와 매입부가세로서 매출부가세를 초과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

3)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의 계산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LIST(Form 02-GTGT,Form 03-GTGT,Form 05- GTGT)

만약 월별 부가세 신고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환급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LIST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신고한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에,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회사는 환급대상기간의 월별 매입부가세 및 매출부가세, 그리고 수정된 금액을 분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6. 원부자재 수입통관시에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통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 관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부자재가 수출재화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경우(국외 상대방과의 수출계약에 의한 경우) 등 수입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가격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if any)입니다

17. 수입물품을 사정상 다시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기납부

한 수입관세 및 관련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되었으나 다시 반송(또는 재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기납부한 수입관세 및 관련 부가세는 환급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1. 실제로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 될 것
2. 동 재화가 베트남에서 생산이나 가공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수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수입처리가 된 세관과 동일한 세관에서 재수출의 업무가 진행될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환급요청신청서: 재수출되는 사유 및 재수출 재화의 수량, 종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2) 수입세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 3) 계약서: 재수출 상대방과의 문서화된 계약서로서 반송사유 및 반송재화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4) 기타 수출관련 일반서류 등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만약 반송사유가 수입품이 수입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격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18.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관세특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 우대세율(Preferential tax rate) : 이는 most-favored-nation("MFN") treatment with Vietnam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됨
- 2) 특별우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x rate): 이는 Specially Preferential treatment with Vietnam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됨 (ASEAN 역대국 및 양자 FTA 체결국 해당)

이 중 특별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건별 수입 총금액이 USD200이하인 경우는 제외)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CO; certificates of origin)을 제출해야만 수입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우대세율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 베트남의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별 지출금액이 VND100,000 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즉 회사이름,주소,TAX CODE, 제공받은 물품과 서비스, 일자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또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이 향후 5년간 공제가 가능한데, 베트남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사업상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차기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월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향후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연도별 사용계획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 개정된 법인세법 Circular 134에 따르면 더 이상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향후 5년간 이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행정편의 주의적인 규정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 투자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많다면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투자기업 A가 보유한 베트남 자회사 A'의 지분을 한국의 다른회사

B에게 매각하는 경우 만약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분양도세(Capital Assign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양도세 = {양도가액 - (최초투자금액+매각관련비용(if any))}×28%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위 지분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A 기업일 것이나, 위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양수자인 B가 됩니다. B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해외에서만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징수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B가 이러한 거래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B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위 A' 회사가 부동산 과다법인인 경우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므로 당연히 베트남의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적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면제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월결손금이 많은 경우에 혹시 이를 최초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지분양도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겠으나, 이월결손금은 위
지분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하는 경우 수입
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무관세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또한 사후절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유
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수출용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원자재는 275일 동안
수입관세의 납부가 유예(면제가 아님)됩니다. 해당 원자재의 수입 시 세관에
해당 원자재의 수입목적 및 수량 등을 신고하여 납부유예를 받아야 하며,

275일 안에 반드시 제조하여 수출완료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
할 경우 납부유예된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뿐만 아니라 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세관의 정
기적인 실사도 있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3. 소요량 증명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세금납부 없이 불법으로 베트남에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량 증명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감모율을 3%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원자재 투입대비 수출이 97%를 미달하게 될 경우 회사는 면제된 관세 등의 추정위험이 있습니다.

24.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한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입니다. 적법하게 베트남에서 과세권을 갖고 추징한 세액은 한국에서 연말 세무확정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5. 수출용 원부자재를 최종 수출기업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저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Local 수출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법에 의한 기본 요건은 1)최종제품이 수출되어야 하며, 최종수출업체가 이를 증명해 주어야 함,2)임가공계약은 외국의 거래처와 직접맺어야 함, 3)수출대금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해야함 등입니다. 이러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26. 베트남에서 골프회원 및 rounding fee 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투자허가서 상 영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법인은 해당 골프장의 영업기간(혹은 구매법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인의 영업기간이 이보다 더 짧다면 구매법인의 영업기간) 동안 회원권 취득 금액을 상각하여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2007년도에 발표된 법인세법시행규칙(Circular134) 에서는 등 상각비용 및 rounding fee 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아직 베트남인들에게는 보편화된 sports 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비는 세법상 business 와 무관한 entertainment 로 간주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7. 2009년도부터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가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소득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2009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은 가장 상위법인 Law 만 공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규정의 변화는 이러한 하위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비교가 가능할 것이나, 일단 신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동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구 분	구 소득세법	신 소득세법
이자, 배당, 자산양도소득	언급되어 있지 않음	과세대상에 포함됨. (세율: 이자, 배당소득 5%, 주식양도소득 20% 또는 매매가액기준 0.1 %, 부동산양도소득 25% 또는 매매가액기준 2%)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각기다른 적용구간에 각 구간별로 0- 40%의 세율이 적용됨	베트남인과 외국인간 적용구간의 차이를 없애고, 세율은 5- 35% 로 소폭인하함.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비거주자의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서 25 %의 단일세율 적용	20 % 로 인하함
근로소득공제	해당내용 없음	인적공제 (본인 월 VND4M, 부양가족월 VND 1.6M) 및 기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8-39104998

Website: SSAUDIT.COM

		부금공제가 신설됨.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고국방문 경비, 자녀교육비 및 주택임차료보조금(근로소득의 15%와 비교하여 작은금액만 과세) 등의 규정이 있음	아직 하위 법령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지는 불분명함.

28. 베트남 주요 조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베트남 법인세법 상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가결산하여 분기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익년 3월말까지 최종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월분의 소득세를 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매월분 익월 20일까지 신고 납부하되,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9.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이 아니지만 직원의 소득세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하는 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세무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베트남 local 직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별다른 issue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의 경우는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즉 1년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류함)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모두 베트남에 합산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점점 베트남에서의 세무risk 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한국에서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통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되며, 이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므로, 베트남의 세무

공무원은 이러한 증빙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베트남 세무서는 신고된 소득금액만큼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즉, 신고된 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으로 간주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함)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한국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세무서의 대응방식을 염두에 두고 최초 신고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점에서 식사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부가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총액/1.1 * 1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납세방법은 세액공제법과 직접공제법이 있으며, 세액공제법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의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직접공제법은 매출액 ×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 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는 세액공제법이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직접공제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산식이 설명해 주듯이, 직접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매출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세금계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산서 상 매입세액이 구분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매입세액을 구분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31. 당사는 한국의 건설회사로서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것은 아니며, 현장만 개설하여 건설공사 수행 후 공사비를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건설공사가 6개월이상 지속된다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되며, 이 경우 베트남에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외국인계약자세(FCWT: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라고 하는 세금인데, 이는 법

인세와 부가세로 구분되며, 납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Withholding Method: 이는 시공자가 별도로 베트남에서의 tax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code를 부여받지 않고 발주처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래의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면, 통상 납부금액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Fully VAS Method: 이는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은 후 VAS(Vietnam Accounting System)에 따라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부가세 또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하여, 관리비용은 일반 법인처럼 발생하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 시 장부상의 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두고 세무서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3) Simplified VAS Method: 이는 흔히 Hybrid Method라고도 하는데,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고 세금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 및 부가세 납부방식에 있어서 2)와 비슷하나, 2)처럼 Fully 장부기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인세 계산방법은 1)의 경우를 따르는 것입니다. 1)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베트남 내의 하도급비율이 큰 경우 절세효과가 크며, 2)와는 달리 비용인정과 관련한 세무서와의 관련한 세무서와의 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32. 질문: 워구의 각 기업은 회계장이 필요한데, 회계장 조건이 무엇이며, 외국인 회계장이 될 수 있는가?

응답:

회계장의 대한 기준과 조건에 대한 규정

2003년 6월 17일에 정해진 03/2003/QH11 및 2004년 5월 31일에 발행된 129/2004/ND-CP 법령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회계장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다.

1. 회계에 관한 업무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에 관한 업무 능력이 대한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회계분야에 최저로 2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년 이상 일해야 한다.

회계에 대한 임무와 능력이 전문대학 능력의 경우에는 회계분야에 최저로 3년 이상 일해야 한다.

2. 회계법 제 51조에 따르면 회계장을 하면 안 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 미성년자, 민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거나 제한이 된자.
소년원에 들어간 자 병이 있는 자, 행정구속을 받는자
- 좋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자, 법정의 판사판결에 의해 회계를 못하는 자, 형사 책임을 받고 있는 자, 형벌을 받고 있거나 경제, 재정, 회계에 대한 죄의 형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
- 같은 회계 단위, 국가 기업, 주식회사, 협력사, 국가의 예산 경비를 쓰는 기업과 조직 또는 국가의 예산 경비를 쓰는 기업과 조직에서 경영 책임을 지거나 회계장도 포함된 회계 단위를 경영하는 사람의 부모, 형제, 자식들
- 국가기업의 주식회사, 협력사, 국가기관, 국가의 예산을 쓰는 조직이나 쓰지 않는 기관일 때 외국기업의 회계장이 될 수 없다.

3. 재정부 규정에 의해 설립된 특별 회계기관에서 증명을 받은 사람은 회계장이 될 수 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외국인에 대한 조건

- 현행 법률 규범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회계장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없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외국인 회계장들도 회계법에서 규정된 회계장에 관한 앞에 말했던 조건에 맞아야 한다.
- 위의 3번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특별회계 기관에 참가하려면 회계전문 증명서, 회계분야 취직증명서, 회계원증명서, 혹은 베트남 재정부가 인정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기지고 있어야 한다. (재정부 장관이 2007년 12월 3일에 결정한 98/2007/QD-BTC 2조 2항에 따르면 회계장을 양성하고 증명서를 제공하는 제도)

33. 질의: 한국에서 7,000,000\$의 재산권을 가진 각 회사들은 회계감사회사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최저 재산권이 얼마 정도면 감사대상이 되는가? 또한 그 밖의 회계감사회사에 의해 감사해야 한 조건은 무엇인가?

응답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독립감사에 대하여 2004년 3월 30일에 정해진 의정 10조 105/2004/ND-CP
에 따라 회계감사를 꼭 해야 하는 회사들.

1. 아래와 같은 기업들의 재정보고는 매년 기업감사에게 꼭 감사되어야
한다.

- a) 외국투자 자본을 갖는 기업
- b) 신용활동을 하는 조직, 은행, 발전상조기금
- c) 보험분야에 활동하는 기업과 신용조직
- d) 주식회사, 한정된 회사, 증권시장에 경영에 관한 포스터를 붙이면 증권 경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에 관한 법 규정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기업들의 재정보고는 이 의정에 따라 매년 기업감사에겐
감사 받아야 한다.

- a) 국가기업
- b) A쪽에 속한 프로젝트의 건설러 투자 자본 보고서

3. 정부총리의 결정과 의정, 법령, 법에 대한 경우.

- 앞으로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본을 갖는 기업, 신용활동을 하는 조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직, 보험 회사들은 꼭 감사 받아야 한다. 기업재산권의 가치에 부속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 한정된 회사, 증권시장에 경영에 관한 포스터를 붙이면 증권경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에 관한 법 규정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4. 질의: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 지불 (일상 생활비, 회사의 경영비)을 했지만 세금을 공제받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지불이 공제될 수 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고 회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외국 투자회사로서 우리는 마케팅에 관한 지불을 많이 하고 있다. 법인세에 관한 제한과 조건이 무엇인가?

응답:

법인세법과 실시문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지불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건이 아래에 있다.

- 법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 지불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 기업의 경영과 생산활동에 관한 실제 발생 지불사항.

그러면 지불사항들을 적당한 지불한 것에 넣을 수 있도록 앞서 말했던 조건에 맞아야 한다. 동시에 법규 문서는 기업수입 세금을 확인할 때 기업들이 공제받을 수 없는 지불만 규정한다.

하지만 법인세법과 실시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앞에 말했던 조건이 충분히 있지만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예를 들면 광고비, 마케팅비, 접대비와 규정에 넘어가는 지불사항)

- 이 규정은 몇 번 고치게 되었고 광고지불, 마케팅 지불사항에 관한 공제 정도가 점점 상승했다. 전에는 5%에서 7% 그리고 지금은 10%까지 이내로 납세한다.
- 현재 베트남에서 건전한 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독점방지에 관한 법체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러한 지불사항에 관한 지불공제 정도를 빼는 것이 적당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

35. 질의: 한국으로 개인이나 회사가 송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금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응답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대금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경영생산 활동을 하고 이자를 받아 외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필요한 자료:

- 기업은 투자법에 따라 투자할 경우 기업수입세금의 임무를 다하고 나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이자율을 확인하는 문서, 재정부가 정한 /24/2004/TT-BTC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수속.

(구체적으로는)

- 외국투자가 외국으로 이자를 보내는 수속을 할 때 외국으로 이자금을 보내는 진술서와 124/2004/TT-BTC 통지서를 지방 세금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세금 기관은 임시 정기송금의 경우 7일 이내에 외국투자가 제의한 외국으로 보내는 이자량에 관련된 기업수입세금번호 확인을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매년 송금과 작업이 다 끝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세금기관의 확인은 외국으로 하지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를 보내는 진술서에 적혀 있다.

- 기업은 투자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외국 계약자) 124/2004/TT-BTC

통지에 관한 수속을 하지 않는다.

36. 질의: 2007년에 비해 0%, 5%정도의 부가 가치세 (GTGT)를 적용하는 대상 범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생산을 위한 기계자재, 전기, 화학, 원료에 관한 부가가치 세금은 5% 이지 2009년부터 10% 부가 가치 세금을 적용할 것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베트남 경제는 주로 직접적인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다던데 앞에 말했던 사항에서 세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응답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수정되었고 2009.1.1일부터 실시 효력이 된 것)에 따르면 5% 부가가치세가 오직 농업생산을 위한 서비스, 물품과 보건, 교육 같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물품에게만 적용된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 물품을 모두 10%의 세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앞에 말했던 서비스 물품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외에 모든 서비스, 물품들을 10%의 세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09년.1.1 부터 기계자재, 전기, 화학 원료 드요이 물품들을 직접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

37. 질의: 외국 전문가를 위한 교통비와 자년교육비를 해당회사가 부담하는데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가? 이 사항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부과한다). 또한 모든 비용이 현재는 빨간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한다. 계산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관이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세금을 계산할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지 궁금하다.

응답

법인세법의 규정과 실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세를 과세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고 있어야 한다.

- 법률 규정에 따른 영수증과 전표가 있는 비용
- 기업의 경영이나 생산활동에 관현 실제 발생한 비용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그래서 규칙에 따라 과세권 종목을 확인할 때 합리적 비용에 해당시키려면 위에 언급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부담해주는 외국 전문가의 교통비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전표가 모두 있어야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부담하는 전문가의 자년 교육비는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이런 비용은 개인비용인데 회사 생산이나 경영 활동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계산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기업은 재정부 영수증 (빨간 영수증) 또는 세무기관이 인정해 주는 인쇄된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계산할 때 나온 영수증이 합법적인 영수증 이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필요하며 규정된 사항이 모두 (충분히) 있어야 한다.

38. 질의/ 응답: 현재 비나신 회사의 외국의 선박 수리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정책에 관련된 질문은 국세청에서 기록하고 문서로 답변을 할 것이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39. 질의: 과세될 소득으로 인정하는 집세와 자년의 학비에 관한 질문

응답:

- 현재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은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들이 지불해 주는 집세의 15% 이하로 세금을 납부해야 인정된다. 기업이 지불해 주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의 자년 교육비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유효하게 될 소득세에 따라 위에 언급한 사항은 다른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주는 비용이 세금을 내야 되는 비용으로 외국인, 내국인이던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금정책의 좋은 점은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40. 질의: 외국인 대표 사무실의 세금신고 서류와 관련된 질문

응답: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 대표사무실의 경우는 요즈음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세금기관이 무역국에 개인 소득세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들이 무역국에서 등록서류를 준비할 때 무역국이 사업 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세금등록 서류를 안내해 주고 세금 등급 번호를 발행시켜준다. 대표사무실 직원의 수입세금에 있어서 2009년부터 실행하는 새로운 개인수입세금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되는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자가 무역국에 등록을 해야 세금 등급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대표사무실은 수입을 주는 기관으로써 세금기관에 납부하기 위해 개인세금을 빼는 것으로 책임져야 하고 세금기관이 요구하면 접수할 수 있게 월급이나 보너스.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증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41. 질의: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질문

응답

- 새롭게 개정되는 개인소득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고 외국인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 소득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대상을 외국이나 베트남인으로 구별하는 현재 수입세 법령과 달리 개인소득세법이 국제 통례에 따라 체류하는 개인이나 체류하지 않은 개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베트남 내/외국에 수입이 있는 베트남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베트남에 수입이 있는 베트남에서 체류하지 않은 사람이다.
- 베트남에서 체류하고 있는 개인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신고해야 되고 동시에 가족에 따라 (본인은 한 달에 4백만 동이 면제되고 식구들은 각각 160만동이 면제된다.) 다를 수 있고 누진세로 납부해야 된다
- 베트남에서 체류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베트남에 자주 체류하지 않거나 집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다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전세계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되는 체류하는 개인과 달리, 체류하지 않은 개인은 베트남에서 나온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42. 질의: 베트남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는데 베트남은 고액 소득자의 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한국 직원들이 한국에서부터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응답:

-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목표는 개인이나 기업이 하나의 수입으로써 이종으로 세금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이나 한국에 체류하는 대상인 개인의 전체 수입을 월급이나 부동산 수입, 복권의 수입 등으로 구분한다. 수입의 종류와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나오는 수입근원, 베트남 양국이 협정에 따라 각각 수입의 종류대로 세금납부 수준을 정한다.
- 한국인인데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월급인 수입을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만 세금을 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베트남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한국에 납부한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세금은 한국측에서 환불해줘야 된다.

그런 세금을 환불 받으려면 방법이 2가지 있다.

- 첫 번째, 협정의 제 25조 양국간 협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때 베트남의 세금납부 대사응로 세금납부자가 베트남 세금기관에 가서 한국기관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두 번째, 세금납부자가 한국의 심사권이 있는 기관과 연결해서 직접 해결할 수 있다.

43. 질의 (비나 LG사): 128/2003/TT-BTC 통지서가 실효되는 동안 국세청의 1766/TCT-DTNN 공문이 발행되었는데 10% 한계로 할인비용이나 마케팅이나 광고 활동에 관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응답

- 128/2003TT-BTC 동지서의 규정에 따라 마케팅과 광고에 관한 비용을 기업의 총비용 10% 이내에 있는 다른 비용으로 정해야 한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 세금총국의 1766/TCT-DTNN 공문이 (128/2003/TT-BTC 통지서 규정에 따른 다른 비용)인 일부 가지 비용을 세금납부 기업수입으로 인정할 때 모두 계산할 수 있다. 이 공문 안내는 2005년과 2006년 간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총국의 2006/12/14일의 471/TCT-PCCS 공문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 적용한다.
- 발행하여 2007년부터 적용하게 된 재정부의 134/2007/TT-BTC 통지서가 1766/TCT-DTNN 공문 안내에 따른 비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했는데 법인세 납부를 확인할 때 모두 계산할 수 있다.

44. 질의: 베트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고아를 위한 지원,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베트남에서의 인간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주 베트남 한국기업협회와 같은 회원비를 낸 경우, 이 비용을 베트남사회를발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이 빙요의 영수증과 증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응답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법인세과 실행안내서에 따라 법인소득세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

- 합법적인 영수증과 전표가 있는 비용
-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경영활동과 관련된 비용

따라서 규칙적으로 세금납부된 비용을 확인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청산할 비용이 위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한국기업협회의 회원비는 협회 규칙에 따라 이 비용이 법인세법 납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인세를 과세할 때 134/2007/TT-BTC 시행규칙의 B부 제3장 제2.8조의 사항에 따라 교육지원금 외에는 베트남에서 봉사활동 및 자선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종목에 해당되지 않다.
- 2009.1.1일부터 국가 프로젝트의 교육과 보건, 집짓는 것에 대한 지원금은 법인세 납부 비용으로 인정하면 된다.
- 기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 기업이 협회회원 가입증명서와 기업의 지불증명서, 지원을 받는 협회나 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관련된 증명서와 같은 증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45. (과표구간) 외국인의 과세소득이 통상적인 베트남의 과세소득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나, 외국인과 베트남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설정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소득자의 과세소득이 최고세율인 35%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개정에서 최고세율을 인하하여도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외국인에게 너무 높은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베트남 내 FDI 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므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높이거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제항목 확대) 베트남에는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체의 공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은 외국과 비교해서 낮지 않고, 과표구간도 낮아서 상대적인 세액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과거에는 주거지원비의 일부, 자년학비 및 국외여비 등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던 비과세소득이 폐지되어, 외국인들이 심각한 세금 증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생대적으로 비싼 국제학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교에 다니고 있으며 (법상 외국인이 베트남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일고 있음), 외국인은 주거편의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곳에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100%~200% 이상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주거지원비 일부, 자녀학비, 국외여비를 비과세소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1, 3, 4): 동 개인소득세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 대상의 모든 개인들에 대해 통일된 적용을 위해 수립. 발행 하였습니다. 기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2가지 과표를 적용하여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과세적용 한도시점도 차이를 두었던 것에 비하여, 동 과표 통일 적용은 국제 관례와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신규 적용 과세한도도 기존 (10%-40%) 보다 감소 (5%-35%)하였고 각 과세적용 단계 간 범위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인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자의 부양가족 및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적용 대상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일부 산업분야 의무보험 등 입니다. 동시에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계산 전에 발생한 자선 및 인도적인 기금 공헌에 대해서도 공제합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별도로 기존 높은 소득세를 적용하였던 외국인의 일부 소득 항목들이 공제됩니다: 주재근무를 위해 베트남 파견 시 수당항목 1회, 베트남 내 잔여 학비, 연 1회 본국 왕복 항공권 구입비, 고용주의 의한 임대료의 15%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등 지난 84/2008/TT-BTC 결정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개인소득세 계산 전 외국인을 위한 별도 공제적용의 지급항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정책들이 기존의 높은 소득세에 비하여 많은 우대적용을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46. (부양가족공제) 한국의 경우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적용하나 (예로 배우자공제), 베트남은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가능연령이면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바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등록) 외국인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등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하는지 등에 대해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답변: 부양가족 신고에서 일반적인 원칙은 해당 배우자 (부양 대상)의 신고 서류의 정확성 여부 관련 납세자의 자진 신고 및 자진 책임부담입니다. 84/2008/TT-BTC 결정문에 제시한 안내들에 따르면 외국인도 베트남인이 자진 신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들과 상응하는 합법성이 있는 서류들을 사용합니다. (예, 자년 출생신고서, 여권,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확인관련 대사관 및 영사관 확인...)

47. 소득세법 제 24 조에 의하면, 임금 지불자는 세금 신고, 공제 및 납부의 의무가 있고 납세자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과세대상 소득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규칙 27/2009/TT-BTC 의 제 2 조 의하면 소득이 있는 고용인은 소득세 유예기간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5 월 31 일까지) 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2009 년 5 월 31 일 이후부터 국회가 다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우지만 고용인이 2009 년 5 월 31 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임금을 지불했던 고용주 또는 퇴사한 고용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기업들은 납부유예조치가 경과한 이후에 유예된 5개월의 세금이 부과될 경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우에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행령 규칙 27/2009/TT-BTC에 의거한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 실시의 목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동 세금 부담 분을 소비촉진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동 시행령에 재무부는 납세자가 2009.1.1-5.31 납세 유예기간 동안 개인소득세 항목들에 대해 재무부는 오는 2009.5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결정 이후 세무기관이 각 수입지출 기관 (해석: 개인소득 지급기관)과 협력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48. 만약 회사가 고용인과 net- base로 노동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지급된 급여액은 세금 gross- salary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노동계약 체결 시 임금 외에 직원의 집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이 집세비용은 net- income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gross- income에 포함되는가?

이전 소득세법에는 이 집세비용을 net- income 또는 gross- income에 포함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 소득세법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세무국에서도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답변: 본 질의는 주택임대 계약에서 임대한 개인의 납세 또는 기업측 납세의 무 여부에 대한 규정을 묻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기업 (임대측)에 의한 납부 세금 항목이면 주택임대료는 세후 수익이며, 기업이 주거입대를 해주는 노동자의 수입에 계산하기 위해서 세전 수익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임대주인 (임대자)에 의한 납부 세금 항목이 주택임대료 항목이면 세전 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위한 주택임대료 지급 제도를 가진 각 기업은 주택임대 계약서 상의 납세의무관련 임대주인과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9. (세제혜택의 축소) 신 법인세법에 의하면 공단지역투자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 신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기존업체의 신설 및 증설 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삭제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의 부여를 통한 투자인센티브 제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업체뿐만 아니라 기존투자업체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증설이나 신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등 세제혜택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제감면이나 세제혜택의 부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2003년도 법인소득세법은 법인소득세 제도 관련 통일을 하였으며 각 경제주체들,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대해서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은 여저니 복잡하고 우대가 산만하며 아직 열악한 지역 및 특별히 열악한 지역들에 우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국회는 법인소득세법을 발행하였고 이 안에는 일부 직업 분야 및 중심우대지역 (7개 직업, 투자우대지역 포함)과 같은 투자우대 지역의 법인설립 및 활동들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각 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경기침체 예방, 경제성장 유지, 사회후생 보장을 목적으로 기급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각 중소기업들의 노동자 수가 300명 이하 또는 법정자본금이 100억동 이하인 경우에는 2008년 4분기와 2009년 전 분기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 2009년도 법인소득세의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나머지 70% 세액은 9개월 기간 안에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50. (비용불인정 항목) 최근 발표되는 법인세 법령은 비용불인정 항목을 나열하고 이를 제외한 비용은 영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비용불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불인정 항목을 너무 확대하여 골프비용의 메입세액 공제불가 및 법인세법 상 비용불인정, 소득세지원액의 비용불인정이 주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비용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증빙의 세법 상 비용인정 등 다양한 증빙을 세무상 비용인정의 근거자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답변: 법인세독세법과 각 법인규정 시행 안내문서들에는 만약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각 지출항목을 공제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a. 법인의 경영 및 생산 활동과 연관된 실질 발생 지출항목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b.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증명서를 충분히 갖춘

지출항목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각 경비지출 항목은 법인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소득 확정 경비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51. 법인세법 제 9 조에 의하면 과세대상 손그을 정할 때 기업은 동조 2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곤 다음의 2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모든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업무 및 생산 활동으로 필요한 또는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일 경우

b.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송부 및 출처 증표가 수반된

경우

만약 회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직접 직원들의 집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을 경우, 이 지출은 회사 업무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 여길 수 있습니까?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상기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일관된 지침이 없어 세무서 별로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법인소득세법과 각 시행 안내문서들에 따르면 만약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각 지출항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a. 법인의 경영 및 생산 활동과 연관된 실질 발생 지출항목
- b.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증명서를 충분히 갖춘 지출항목

그러므로 법인이 노동자의 주택임대료를 임대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갖고 동 주택임대료 지불항목이 법인과 노동자 사이의 노동계약서 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지출항목은 과세소득 확정 경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52.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현정상 명확히 세금면제가 가능한 항목이나 면제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과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는 명확히 세금면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선납부 후 환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면세신청 및 허가절차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답변: 종게는 한-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넓게는 각 베트남의 나라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모두 베트남에서 면세 및 감세 가능 대상과 같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낮은 과세대상의 소득종류들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에는 면세 및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경영에 따른 소득면세 혜택을 위해서 그 대상은 해당 경영소득이 한국 거주대상이어야 가능하며 해당 경영소득은 베트남에 있는 해당 대상의 특정 상주기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각 사업들과 연관된 보수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위해서는 한 개인이 한국 거주대상이고 동시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조건 1) 해당 개인은 연속 12개월 기간 동안 베트남 내 183일 이하 체류

조건 2) 해당 개인의 고용주는 베트남 거주 대상이 아닌 경우

조건 3) 보수가 특정 상주기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해당 개인의 고용주가 베트남에 있는 경우

그러므로 협정에 따라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위해서는 각 기관과 개인은 협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율납세 자율신고 제도 시행관련 2007.6.14일자 재무부의 안내문 60/2007/TT-BTC 및 정부의 2007.5.25일자 의정서 85/2007/ND-CP의 세금관리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자율신고서에 각 기업 또는 개인이 자율신고 할 소득이 있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 해당 절차들은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과 협정이 맺어진 각 국가 및 영토의 모든 거주 대상에 대하여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대한 면세 및 감세는 조건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서로 차이가 나는 소득종류에 대한 적용 절차에 대한 각 규정도 서로 차이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협정의 모든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른 면세 및 감세 통보 (안내문 60/2007/TT-BTC 내 양식에 따른 기업 또는 개인 자율 통부)

거주 국가가 발행한 거주증명서 (협정 적용범위 포함 대상의 증명 목적)

계약서 사본 (소득종류 증명 목적)

그 외에 납세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약 한 납세자가 이전 한 해 동안 협정에 의해 면세 및 감세를 받았었다면 다음 해부터는 전 해에 제출한 일부 서류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각 종 계약서)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2007.7.1부터 베트남은 자율신고 및 자율납세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협정에 따른 면세 및 감세 적용 건도 동제도의 적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기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및 감세 쪽에 속하는 통보기록 (자료)에 대한 면세 및 감세 결정과 같은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신고자가 자신의 세금신고 기본 서류에 근거하여 신고 및 납세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신고자가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와 함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면세 및 감세에 속한다고 통보를 한 경우 세무기관이 여전히 선 납세 후 환급을 요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구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53.시행령 규칙 134/2007/TT-BTC 의 Part H 의 9 항에 의하면 의류업체일을 하는 회사가 법인세 혜택 요건 (수출 비율 요건 외)을 충족시키면 그 회사는 충족시켰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년에 공업공단에 설립된 의류회사가 시행령 24/2000/ND-CP 제 46 조에 명시된 요건 (공업공단에 설립되었고 50% 이사이 생산품을 수출하는 회사)을 충족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된 시행령 27/2003/ND- CP 상 법인세 혜택 요건이 공업공단 내에 설립으로 바뀌었다면 이 회사는 시행령 규칙 134/2007/TT-BTC 상 계속해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재무부는 WTO 합의에 따라서 수출비율 조건에 충족함으로써 받는 법인소득세 우대의 폐지를 당한 기업들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안내 관련 각 부처 및 기관에 공문 2348/BTC-TCT (2009.3.3)를 발송하였습니다.

수출비율에 대한 유대조건들 외에 다른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공문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8951/VPCP- KTTT (2008.12.31)의 정부총리의 지도의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봉제분야에 활동하는 기업은 만약 기업소득세에 대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면 (수출비율에 대한 조건충족 및 국내 원료사용에 의한 우대 조건 제외) 국내 원료사용에 의한 우대 혜택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 생산

투자우대지역 명단에 포함된 열악한 또는 특별히 열악한 사회경제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실시

다수 노동자 사용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남은 우대기간에 대해서 우대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조건들과 상응하는법인소득세 우대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우대 세금 혜택을 위한 2가지 방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 받고, 동 2가지 방안 중 선택한 한 방안에 따라서 세무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방안1: 법인설립 허가서 취득한 시점에서의 법인소득세 관련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기존의 각 법률 규범 문서 내 규정들에 따라 남은 우대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만족하는 각 조건과 상응하는 법인소득세의 지속적인 우대 혜택 가능 (수출비율에 대한 조건충족 및 국내 원료사용에 의한 우대 조건 제외)

방안 2: WTO 합의 (2007.1.11)에 의한 조정된 시점에서의 법인소득세 관련 기존의 각 법률 규범 문서 내 규정들에 따라 남은 우대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만족하는 각 조건과 상응하는 법인소득세의 지속적인 우대 혜택 가능 (수출비율에 대한 조건충족 및 국내 원료사용에 의한 우대 조건 제외).

54. 외국을 운항하는 베트남 국적선이 베트남내 조선소에서 수리공사시 베트남 선주사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반대로 상기 베트남 국적선이 해외조선소에서 수리공사시 부가가치세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베트남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유리하여 베트남 전선소 사용을 기피하고 해외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는 외국을 운항하는 국적선이 자국 내 조선소에서 수리시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부가가치세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외화낭비를 막고 베트남 조선소들이 베트남 조선소들이 베트남 국 적선을 수리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의 의정서 123/2008/ND-CP (2008.12.8) 6조 1항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따르면:

- 국제운항은 세율을 0% 적용하게 된다.
- 수출서비스는 세율을 0% 적용하고 외국에 있는 기관 및 개인 또는 비관세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공급서비스를 포함한다 (해외로 나가는 재보험, 기술이전, 해외로 나가는 지적소유권 양도, 자본 양도, 신용허가, 해외로 나가는 증권투자, 파생금융, 우정통신의 각 서비스들은 제외)

해외에 있는 기관이란 베트남 내 상주기반이 없는 기관을 뜻하며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있는 개인은 베트남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하며 해외로 이주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했거나 서비스 공급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 외 지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뜻합니다.

비관세구역에서의 기관 및 개인은 정부총리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 및 기타 조건들을 등록한 기관 및 개인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 경영기반이 있는 경우, 베트남 내 상주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외국선주를 위해 국제운항 선박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수리서비스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베트남 내 경영기반이 있으면서 베트남에서의 개인 및 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국제운항 선박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내에서 2개 경영기반 (개체) 사이의 서비스 공급활동이 되므로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국제운항 활동은 국제운항을 하는 선박이 있는 베트남 기관 및 개인이어야 하며, 선박 수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 액수가 공제 (또는 조건충족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운항의 베트남 선박수리에 대한 가격관련 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이는 다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55. (매입세액공제) 신규 부가세법령에 의하여 올해부터는 2 천만 동 이사이 국내 매입거래는 반드시 은행이체 증빙이 구비되어야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낮아서 매우 번거로우며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체 증빙이 필요한 경우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의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몇 가지의 사례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공〇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답변: 정부 의정서 123/2008/ND-CP (2008.12.8) 9조 2항 C에는 부가가치세 공제조건을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상세한 규정 및 시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b) 구입한 물품 또는 은행결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동 규정이 적용되며 매출 영수증에 따라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가 20백만 동 (VND)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백만 동 (VND)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영수증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체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는 은행을 통한 결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회 영수증에 따라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가 20백만 동 (VND)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는 부가가치세 공제관련 은행결제 영수증 구비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56.(Local 수출인정문제) 현재 on- the- spot export (local 수출)의 경우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최종제품이 수출되었음에도 이전납품업체의 거래는 내수거래로 인정되어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로 무상사금 (원청자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납품업체에 위탁 가공해서 납품하는 형태)의 경우 수입자가 하청업체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가 Local 수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보편적입니다. 아울러 지방 성마다 인정여부가 달리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100% 수출업체와 계약하고 대금지급을 Local 에서 받을 경우 대금지급이 외국에서 송금되지 않으므로 해당 납품거래는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ocal 수출의 경우 한국에서는 최종제품의 수출여부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답변: 재무부 시행문서 129/2008/TT-BTC (2009.12.26)의 B- II- 1.1a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수출상품은

- 위탁수출을 포함한 해외로 나가는 수출상품
- 정부총리의 규정에 따른 비관세지역으로 판매하는 상품
- 면세상점에 판매하는 상품
- 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는 모든 경우
- ❖ 국제 상품 매매활동 및 외국과의 매매대리 또는 상품가공 활동들에 대한 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가공상품
- ❖ 국제 상품 매매활동 및 외국과의 매매대리 또는 상품가공 활동들에 대한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Local 수출 가공상품
- ❖ 외국에서의 작매장, 박람회 판매를 위한 수출상품

위규정에 근거하여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Local 수출 가공상품들은 부가가치세 0% 세율의 적용 대상에 속합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57. (환급절차) 부가세 환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울러 세무서별로 부가세 환급절차 운영에 일관성이 없고 차이가 크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의 경우 매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회사의 부가세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와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고 환급을 위한 조사도 따로 받아야 하고 환급일정도 신청서 제출 이후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도한 절차와 시간 지연은 회사에게 추가업무부담 및 비용부담, 자금부담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07.7.1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세금관리법 및 각 시행안내 문서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는 재무부 시행문서 60/2007/TT-BTC (2007.6.14)의 G- I- 1, 2, 3, 4,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서 각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며, 어떠한 추가적인 서류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무일수 3일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이내 한하여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서류를 완비할 수 있도록 통보할 것입니다.

선환급, 후검사에 속하는 세금환급 서류에 대한 세금환급 기간은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낮어도 15일 입니다. 선검사, 후환급에 속하는 세금 환급 서류에 대한 세금환급 기간은 낮어도 60일 입니다.

경제침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을 통한 결제 증명서가 없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임시 세금환급 (90%)의 해결기한을 기업의 세금환급 요청관련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수 7일을 넘을 수 없으며 다음 10%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4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기 각 규정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환급 업무는 기업의 자율신고에 의한 것이며 해당 신고서에 따라서 세금환급 요청을 합니다.

현재 재무부는 세금관리업무 현대화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안에 세금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내 리스크 평가지표 수립연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금 관리업무의 효율성 보장을 합니다.

재무부는 보다 더적합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혁연구를 위해 기업의 건의를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접수합니다.

58.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HS 코드 규정이 없거나 세관 또는 통관 담당자에 따라 다른 HS 코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HS 코드 또는 관세율 운영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결해줄 조정기구를 재무부내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출입 상품 분류 관련, 재무부는 수출입 상품목록과 수입우대 과세표, 수출 과세표에 따른 상품 분류업무 실행안내를 하는 시행문서 85/2003/TT-BTC (2003.8.29)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 적용세율의 차이발생을 야기하는 세관수속업무를 할 때 상품코드 변화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세관수속 예정지의 세관지국에서 수출입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화물에 대한 수출, 수입 전 상품분류 수속을 해야 합니다. (시행문서 85/2003/TT-BTC B- IV에서 규정).

- 세관 측의 분류 결론에 대해 기업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제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 수속업무의 재검토를 위한 세관지국 국장예의 제의문서가 있습니다. 만약세관지국의 제소해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기업은 해당되는 성 또는 도시의 세관국장으로 제의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각 급의 세관 측의 제소결정 결과에 대하여 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 (85/20036- TT- BTC D에 규정)에 따라 법정에 소송 착수의 권한이 있습니다.

59. (한- 아세안 FTA 특혜이행) 한 - 아세안 FTA 금년부터 베트남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러한 특혜를 활용하는 빈도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세관당국에서는 한 - 아세안 FTA 특혜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을 만든 것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특혜 원산지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베트남 내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2007.6월 발효하였으며 2009-2011 단계의 한 - 아세안 수입 특별우대 세율표 발행 관련 현재 재무부 장관의 2008.12.1자 결정문 (112/2008/QD-BTC)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내 특별우대들의 운용에 대한 안내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2011 단계의 한 - 아세안 수입 특별우대 세율표 발행관련 재무부 장관의 2008.12.1자 결정문 (112/2008/QH-BTC)
2. 특별우대 수입세율 실행안내 관련 재무부 장관의 2007.5.7자 시행문서 (45/2007/TT-BTC)

한 - 아세안 FTA의 특별우대 혜택을 위해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상기 안내문서들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1.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이 중 세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특별우대 수입세의 세율을 스스로 확인 또는 세관신고 진행 전에 특별우대 세율 적용의 안내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세관공무원에게 요청)
2. 상품매매 계약서, 교육 영수증, 운송 영수증
3. 산업무역부 사무소 또는 한국 세관기관이 발급하는 한 - 아세안 상품 원산지 증명서 (C/O-AK 양식), 직항 운송 증명서류

그 외에 많은 종류의 수입상품, 수입허가서가 필요한 상품 또는 품질관련 정부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속하는 상품 등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하여 상기 각 문서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0. (통관처리시한 단축) 세관에 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처리가 지연되어 애로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관처리 절차를 단축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긴요한 물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처리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답변: 질의자께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관계로, 기업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관총국은 기업의 건의를 접수하고 이번 회담장소에서 구체적인 대화 및 해답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긴급히 사용이 필요한 물품 또는 부서지기 쉬운 물품 종류들에 대해서 현재 별도로 의정서 154/2005/ND-CP 37조 1항에 따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 기관장은 긴급 요청 서비스를 위한 수입, 수출이 되는 물품 확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집니다.
- 긴급 요청 서비스의 수출, 수입 물품은 세관서류에 속하는 각 증명서의 제출전에 통관이 가능하나다. 제출 연기기한은 화물이 통관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세관지국은 화물의 특징, 여러 종류, 긴급 정도에 근거하여 적합한 실질 화물 검사형식을 결정합니다.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61. 시행령 134/2008/TT-BTC의 part C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 서비스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했다면 시행령 134/2008/TT-BTC과 시행령 05/2005/TT-BTC 중 어느 시행령이 적용되나?

답변: 시행령 134/2008/TT-BTC의 보충안내 문서인 2665/BTC-TCT (2009.3.10)

에 따르면

시행령 134/2008/TT-BTC의 발효 전에 체결된 각 입찰계약, 하도급 계약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재무부 시행령 05/2005/TT-BTC (2005.1.11)의 안내에 따라서 계약만료 기간까지 계속 실행합니다. (항공 및 해상 운항, 국제발송 및 국제화물 인수인계 부분에 속하는 입찰계약들은 제외)

62.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출이자보조금 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대출”은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활동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들이 사례가 되는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63. (한국투자업체의 지연이자 배상) 2005년 Tay Ninh 세관이 한국 투자업체에 대해 수입관세로 78억 동을 부과하였습니다. 동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동 분할상환을 승인하는 베트남 세관의 공문에는 벌과금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최종 납부금을 지불하는 시점에서 Tay Ninh 세관은 미납 지연이자 29.8억 동을 지불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일 Tay Ninh 세관이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했으면 분할상환을 승인하는 2006년 9월 공문에서 이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분할상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세무행정예 대한 기업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 국세청은 동 문제 관련하여 세관총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 질의내용이 아직 불분명한 관계로 적합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



Auditing and Consulting Co.,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세한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한국측에 제의합니다.